

3. 계약업무처리 - 수의계약사유

구매 계약 등의 체결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.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26조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<개정 2023. 4. 11.>

1.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
2.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
3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·구매하는 경우
4.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·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·구매 또는 용역 계약(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)을 체결하거나,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·임대하는 경우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·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

3. 계약업무처리 - 수의계약사유

구매 계약 등의 체결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.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

가. 천재지변,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, 작전상의 병력 이동, 긴급한 행사,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, 원자재의 가격급등,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 · 시설물 개선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나. 국가안전보장,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, 군시설물의 관리, 외교관계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,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

다.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을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(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)를 제조 · 구매하는 경우

라.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

→ 실질적으로 학교에 해당되는 사항 존재하지 않음

3. 계약업무처리 - 수의계약사유

구매 계약 등의 체결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.

2.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

- 가.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
- 나.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
- 다.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
- 라.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
- 마. 특허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4조에 따라 지정 · 고시된 신기술,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, 종전의 「전력기술관리법」 제6조의2에 따라 지정 · 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1조에 따라 지정 · 고시된 방재신기술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
- 바. 해당 물품을 제조 ·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· 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
- 사.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 · 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 · 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
- 아.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
- 자.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**
- 차. 특정인의 기술 · 품질이나 경험 · 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 · 설계 · 감리 · 특수측량 · 훈련 계약,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,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
- 카. 특정인의 토지 · 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

3. 계약업무처리 - 수의계약사유

구매 계약 등의 체결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.

2.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

자.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
유의사항

1)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 뿐이여야 하고 – 물품독점공급계약서 등

2)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–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당 제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내부품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임

* 대부분의 사업단이 1) 독점공급계약서 등은 잘 구비하고 있으나 2) 해당 물품이 필요한 근거에 대해서는 미비한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사유를 근거로 수의계약 체결시 유의할 필요 있음

3. 계약업무처리 - 수의계약사유

구매 계약 등의 체결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.

3.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 · 구매하는 경우

- 가.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
- 나.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
- 다.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
- 라.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
- 마.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의2,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7조,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4조 또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1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 · 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
- 바.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· 고시된 제품
- 사.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1조에 따라 지정 · 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(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
- 아. 삭제 <2020. 9. 29.>
- 자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5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에 합치된 것으로 확인한 제품으로서 「전자정부법 시행령」 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한 제품

→ 해당 시점에 각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 서류 증빙 필요

3. 계약업무처리 - 수의계약사유

구매 계약 등의 체결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.

4.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·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·구매 또는 용역 계약(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)을 체결하거나,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·임대하는 경우

가.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

나.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

다.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

라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

→ 각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 서류 증빙 필요

3. 계약업무처리 - 수의계약사유

구매 계약 등의 체결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.
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 · 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

가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

- 1)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건설공사 –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, 전문공사로서 –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,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
- 2)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·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
- 3)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 ·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. 다만,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 ·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.
- “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”
- 4)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 · 원가계산 · 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 · 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 ·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

→ 각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 서류 증빙 필요(계약시점에 수령하여야 함)

3. 계약업무처리 - 수의계약사유

구매 계약 등의 체결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.
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 · 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, 계속

- 5) 추정가격이 2천만원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 ·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
 - 가)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
 - 나) 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
 - 다)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,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
- 6)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(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)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 · 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

→ 각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 서류 증빙 필요(계약시점에 수령하여야 함)

3. 계약업무처리 - 수의계약사유

구매 계약 등의 체결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.
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 · 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, 계속

- 나. 재외공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
- 다. 물품을 가공 · 하역 · 운송 또는 보관할 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라. 「방위사업법」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 · 구매하는 경우
- 마.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
- 바.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
- 사.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
- 아. 「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